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2024. 9.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목차 CONTENTS

들어가며

제1절 출연(연)과 연구사업화

1. 출연(연) 개요 ····· 2
2. 출연(연) 연구사업화 현황 ····· 4

제2절 관련 법령 및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

1. 출연(연)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예방·관리 ····· 6
2.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유의사항 ····· 8

제3절 안내서의 활용방법과 구성

1. 안내서의 활용방법 ····· 10
2. 안내서의 구성 및 용어 ····· 12

제1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1절 유가증권 거래 행위

1. 주요 이슈 ····· 18
2. 관련 법령 ····· 19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25
4. 기본 방향 ····· 30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32

제2절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행위

1. 주요 이슈 ····· 35
2. 관련 법령 ····· 36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39
4. 기본 방향 ····· 4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42

목차 CONTENTS

제2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1절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행위

1. 주요 이슈 ····· 46
2. 관련 법령 ····· 47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48
4. 기본 방향 ····· 5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52

제2절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 행위

1. 주요 이슈 ····· 53
2. 관련 법령 ····· 54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56
4. 기본 방향 ····· 60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61

제3장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제1절 기관 소유·임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1. 주요 이슈 ····· 66
2. 관련 법령 ····· 67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67
4. 기본 방향 ····· 7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72

제2절 연구개발성과 소유와 이해충돌

1. 주요 이슈 ····· 74
2. 관련 법령 ····· 75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76
4. 기본 방향 ····· 82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83

◎ 마치며 ····· 84
◎ 부 록 ····· 85
◎ 저자 소개 ····· 102

발간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줄임말로 출연(연)은 1966년 최초 설립된 이래 오늘날 23개 기관이 화학, 정보 통신, 생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경제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화하는 것 또한 출연(연)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의 출연(연) 연구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2021년 5월 제정되고 1년 후인 2022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은 비록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출연(연) 임직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출연(연)의 연구사업화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사업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실제 창업을 위해 휴·겸직을 한 연구자, 기술이전을 한 출연(연) 등이 겪을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사업화를 촉진하며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및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연구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이러한 안내서의 후속 시리즈의 성격을 띠며,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합니다.

본 안내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구사업화 관련 법령과 출연(연) 내부 규정을 분석하고, 연구사업화 담당자와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사업화 과정의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연(연) 임직원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출연(연)과 관계회사가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출연(연) 임직원이 자문 등을 제공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 출연(연) 임직원이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출연(연) 장비 등을 사용하는 행위, 출연(연)과 관계회사 사이의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이 주요 이슈임을 발견하고, 각 이슈별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사업화를 진행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발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및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등 다양한 자료와 함께 본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출연(연)의 기술이 이전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들어가며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제❶절
출연(연)과 연구사업화

1. 출연(연) 개요 ····· 2
2. 출연(연) 연구사업화 현황 ····· 4

제❷절
관련 법령 및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

1. 출연(연)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예방·관리 ····· 6
2.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유의사항 ····· 8

제❸절
안내서의 활용방법과 구성

1. 안내서의 활용방법 ····· 10
2. 안내서의 구성 및 용어 ····· 12

들어가며

제1절 출연(연)과 연구사업화

1. 출연(연) 개요

출연(연)의 연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고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 설립 근거를 둠

참고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 2024년 8월 말 기준 출연(연)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19개 연구기관과 4개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23개 기관으로 구성됨
  - 현재 4개 부설연구소를 제외한 19개 출연(연)은 과기출연기관법 제3조 및 제8조제1항 [별표]에 따라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설립 가능
  - 부설연구소를 제외한 연구기관은 당초 21개였으나, 2024년 상반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외되어 19개 기관으로 정해짐

- 출연(연)은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 당시 3개의 연구회 체제로 출발한 다음 2008년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이사회 체제로 운영됨
  -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던 출연(연)은 근거법을 단일화하여 1999년 3개 연구회 체제(기초·공공·산업)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다가, 2014년 출연(연)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발전하여 단일 체제로 통합됨

출연(연)의 성과

- 출연(연)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행, 신기술 사업화, 지역혁신의 주요한 축임
  - 출연(연)은 DRAM(반도체)·CDMA(무선통신) 등 기술개발 성과로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견인하였으며, 소부장·코로나19·요소수대란 등 국가 위기에서도 기술 자립화 등을 지원하여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함

[표] 시대별 출연(연)의 역할과 주요성과

시대	1970~1980년대: 태동·성장	1990~2000년대: 국가R&D 거점	2010년대~현재: 역할 재정립
요구 역할	• **산업체 직접 지원·공업화** • 선진기술 도입·응용	• 산·학·연이 협력하여 **국가R&D (대형과제)를 수행**하는 거점	• **국가 전략기술(기술주권) 및 미래 먹거리 확보**의 중심
주요 성과	• 해외 교포 과학자 유치 창구 • 국산1호 컴퓨터('73), 폴리에스터필름 국산화('78)	• DRAM 개발('92), CDMA 상용화('96) • 한국형 고속열차('04)	• SMART 원자로 개발('12) • 누리호 발사('2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2024. 6. 26., 2면.

- 출연(연)은 안정적 인프라를 갖고 장기간 집단 연구 및 기술 축적이 가능하여 통상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현재 정부 연구개발 수행의 주요한 주체임
  - 2023년 정부 R&D 예산 31조 574억 원 중 4조 5,355억 원(출연금 2조 원+정부수탁 2.5조 원)을 차지하여 정부 R&D 수행의 14.6%를 담당하는 국가정책 실현의 주요 주체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2024.6.26., 3면)

2. 출연(연) 연구사업화 현황

- 출연(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여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사업화이며,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는 크게 ① 기술이전, ② 실험실 창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 출연(연)은 공공연구소 중 기술이전 건수가 가장 많은 연구기관이며, 기술이전율은 국공립연구기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연구소 중에서도 기술이전의 역량과 중요성이 큰 연구기관임
  - 2021년도 기준 출연(연)의 기술이전 건수는 총 5,384건이며, 기술이전율*은 68.8%임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확보(개발)기술 건수

[표] 출연(연) 기술이전 현황

구분		신규확보기술(건)	기술이전(건)	기술이전율(%)
공공연구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821	5,384	68.8
	특정연구기관	3,553	761	21.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63	430	27.5
	국공립연구기관	1,142	1,140	99.8
	기타 공공연구기관	2,224	569	25.6
	소계	16,303	8,284	50.8
대학	국공립대학	7,640	2,521	33.0
	사립대학	13,651	4,578	33.5
	소계	21,291	7,099	33.3
합계		37,594	15,383	40.9

※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년도의 이전된 기술건수(조사대상년도에 개발된 기술이 아닌 것을 포함)를 조사대상년도의 신규확보(개발) 기술건수로 나눈 값이므로 산술적으로 100%를 넘을 수도 있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2),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출연(연) 실험실 창업 현황

- 출연(연)의 실험실 창업은 연구자가 기술출자를 받지 않고 기술이전만을 받아 직접 창업한 경우(기술이전형 창업)와 소속 출연(연)의 기술출자를 받아 창업하는 경우(기술출자형 창업)로 구분할 수 있음

- 출연(연)에서는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과 2000년 중반부터의 기술이전 사업화 확대가 추진된 이후 2021년까지 총 565개의 실험실 기업이 설립되었고, 2021년 말 기준 운영 중인 회사는 424개로 생존율은 약 75%임

  - 출연(연)의 실험실 창업은 기술이전형 창업이 기술출자형 창업보다 많은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기술이전형 창업 기업은 338개(59.8%)임

[표] 출연(연) 설립유형별 실험실 기업 수(1999-2021)

(단위: 건, %)

구분	기술출자형				기술이전형		합계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기업 수(개)	203	(35.9%)	24	(4.2%)	338	(59.8%)	565	(100.0%)
운영기업 수(개)	171	(40.3%)	22	(5.2%)	231	(54.5%)	424	(100.0%)
생존율(%)	84.2		91.7		68.3		75.0	

주: 설립형태 간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음. 예) 연구원 창업기업인 동시에 연구소기업인 경우가 있음

출처: 최지선 외(2023,「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4면, 재인용.



제2절 관련 법령 및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

1. 출연(연) 직무수행과 이해충돌 예방·관리

이해충돌의 개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본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함)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으로,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및 연구사업화 직무과정의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중요성

- 출연(연) 연구자는 출연(연) 설립목표와 업무 특성에 따라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자, 평가자, 교육자, 연구사업화(기술이전) 추진자, 창업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직무 유형 가운데 기술이전 또는 실험실 창업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얻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게 되므로 금전적·인적 원인에 기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지는바, 연구사업화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직무 유형에 해당함

[표] 출연(연) 직원의 직무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유형(예시)

구분		내용
사적관계 신고/ 채용제한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 갈등, 금전적 이해관계 등 사적인 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직무 유형별 예시	• (연구)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참여하는 경우 • (교육) 학생 선발, 각종 포상, 상벌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 (실험실창업·계약) 연구기관이 실험실창업 기업과의 협력연구 수행시 연구자가 창업연구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계약조건을 차별화하는 경우 • (평가·파견) 평가, 파견자 선발 과정 등에서 자신의 지도학생, 동료, 가족, 지인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
재산보유/ 거래·계약/ 비밀이용/ 사례금수수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직무 유형별 예시	• (연구) 연구자가 사외이사직을 맡은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해당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 (교육) 배우자의 사업에 금전적 혜택을 준 회사를 위해 자신의 연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려주는 경우 • (자문) 영리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받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 (실험실창업·계약) 실험실창업 후 후속발명으로 발명된 연구개발성과를 소속 연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특구지정 등) 신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소유하도록 한 경우
업무범위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연구자가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직무 유형별 예시	• (교육·자문)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소속 연구기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료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활동/ 파견 등의 문제	구체적 상황	•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우
	직무 유형별 예시	• (평가·심사) 기업 소속 연구자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소속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출처: 최지선 외(2023),「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 65-66면, 일부 인용.

2. 출연(연)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유의사항

출연(연)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려

- 출연(연) 연구자는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 연구문화를 토대로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지위에 기인한 권리와 함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행동 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의 의무가 공존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관리라는 법적 의무가 연구사업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및 연구사업화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연(연)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를 정교하게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동시 준수 필요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연)의 원장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그 일부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참고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 동시에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2022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므로, 출연(연)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일부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이에 따라 출연(연)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문화 존중과 합리적인 이해충돌 예방·관리의 균형

-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활동에 적용되는 이해충돌에 관련 법제도가 중층적이고 복잡하며, 최근 새로운 법령이 계속하여 제·개정되고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1.5.18.제정, '22.5.19.시행)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81.12.31. 제정, '83.1.1.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08.2.29.폐지 제정, '08.2.29.시행) 및 동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부패방지법 당시 '03.2.18.제정, '03.5.19.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15.3.27.제정, '16.9.28.시행)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가 연구자에게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어 연구개발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존 법령 및 자체 연구윤리규정과 조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충돌 예방·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함

제3절 안내서의 활용방법과 구성

1. 안내서의 활용방법

안내서의 발간 목적

- 본 안내서는 출연(연)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사업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개발 현장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연구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함

활용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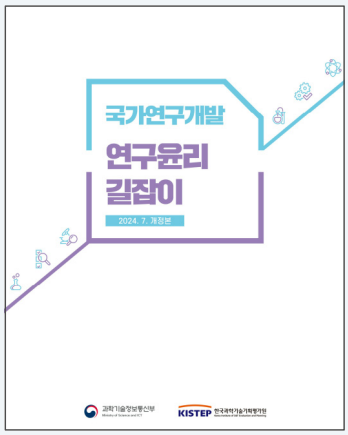
- 본 안내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이슈에 대한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본 안내서는 2023년에 수행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근간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연) 운영사례에 비추어 연구현장의 질문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기본 방향 및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부분 등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안내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이슈에 대한 기초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기 바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안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별도의 법률자문을 의뢰하거나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http://www.clean.go.kr)에 질문 또는 상담을 통해 회신을 받는 것을 권고함

안내서의 연관 시리즈의 병행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안내서 이전에도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 및 연구현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안내서 형태의 발간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본 안내서는 그 후속 시리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행 발간물을 병행하여 활용하면 본 안내서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매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발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은 2023년 3월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음

[표] 본 안내서의 선행 시리즈 및 연관 안내서 소개

시리즈 발간물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2024. 07. 제3차 개정본)」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는 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의 것으로 연구진실성, 학문교류윤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생명윤리, 건전한 연구실문화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내용을 소개·해설하고 있음 • 특히, 길잡이 내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파트”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주요 조문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석하고 있으므로, 본 안내서와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2023. 03. 31. 제정본) 	•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는 본 안내서의 선행 시리즈물에 해당하는 안내서로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술이전 및 실험실 창업(연구자 직접 창업과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창업을 모두 포함)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중 연구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10대 쟁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슈 정리, 법령 해석, 출연(연) 현황 및 참고사례 검토, 판례 분석, 질의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공함 • 본 안내서와 유사한 포맷으로 작성되어 있고 일부 내용은 이해충돌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2. 안내서의 구성 및 용어

안내서의 세부 구성

- 본 안내서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관련된 12개 세부 이슈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함

[표] 안내서의 이해충돌 관련 12대 세부 이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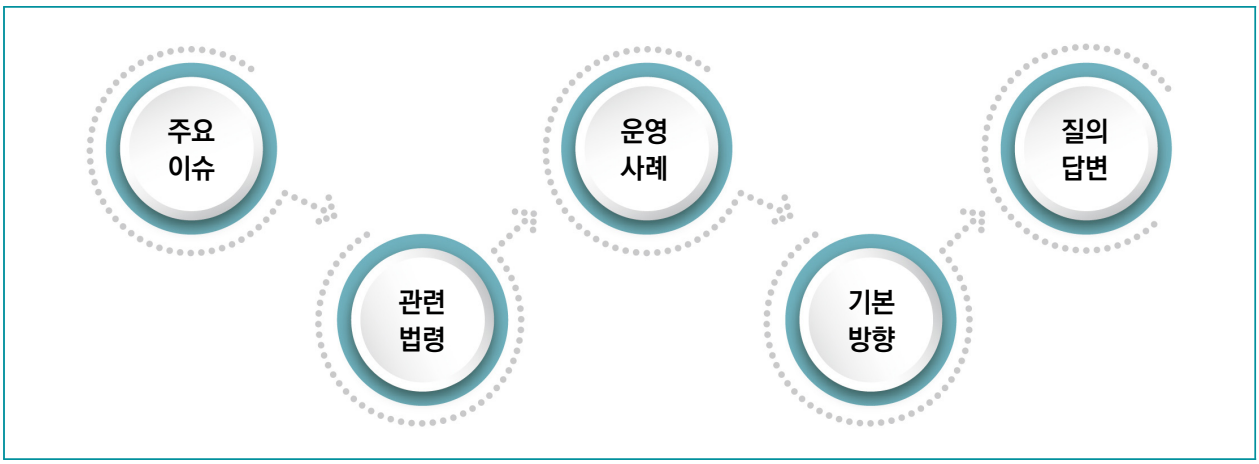
영역	행위	세부 이슈
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1. 유가증권 거래	1-1-① 출연(연)의 임직원이 관계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매수·매도)하는 경우 1-1-② 출연(연)의 임직원이 관계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매수·매도)하는 것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체결	1-2-① 출연(연)과 관계회사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거래를 하는 경우 1-2-② 출연(연)이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정부 및 산업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2 직무관련 외부 활동	1.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2-1-① 출연(연) 임직원이 관계회사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2-1-② 출연(연) 임직원이 관계회사에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	2-2-① 출연(연) 임직원이 휴·겸직을 통하여 관계회사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2-2-② 출연(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반기업의 사외이사 등 임직원이 되는 경우
3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1. 기관 소유·임차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3-1-① 관계회사가 출연(연)이 보유한 공간 및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3-1-② 출연(연)의 특허 무상나눔 행사에서 관계회사를 참여시키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	3-2-① 출연(연)의 임직원이 겸직한 관계회사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경우 3-2-② 출연(연)의 임직원이 겸직한 관계회사에서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등)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함. 이하 같음

- 이와 같은 이슈 유형화는 본 안내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수행된 정책연구(2023년 6월~2024년 1월)를 통해 발굴되었으며, 이후 출연(연) 연구자·TLO·감사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2~5월)를 거친 이후, 발간 용역(2024년 8월~)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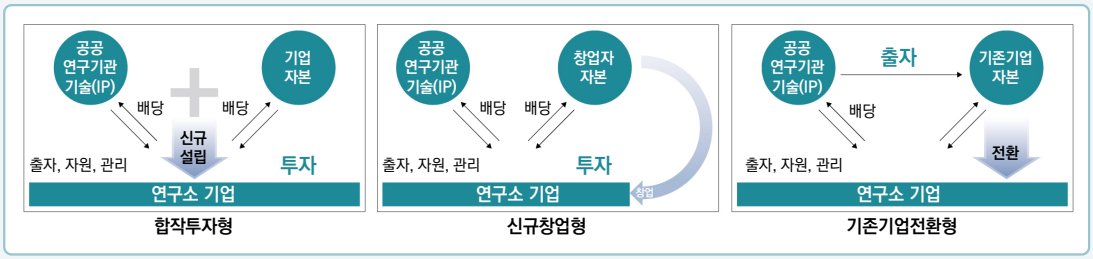
- 각 세부 이슈는 ① 주요 이슈, ② 관련 법령, ③ 운영 사례, ④ 기본 방향, ⑤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이슈) 연구현장의 주요한 궁금증을 질문 형태로 정리함
  - (관련 법령) 연구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설명함
  -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안내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 기존 안내서 및 규정 등의 사례, 참고할 만한 판결례, 일부 출연(연)의 관련 규정 등을 소개함
  - (기본 방향)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연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 이슈별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의 원칙을 제시함
  -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앞서 소개한 법령, 운영 사례 및 기본 방향 등을 토대로 연구현장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그림] 각 이슈별 안내서의 구성



용어 설명

- 본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하여 소개함

구분	내 용
출연(연)	• 본 안내서에서 "출연(연)"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운영 중인 19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개의 부설연구소를 말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기술 이전	• 본 안내서에서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또는 기술처분권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실험실 창업	• 본 안내서에서 "실험실 창업"이란 출연(연) 소속 재직자가 소속 기관이 권리를 보유한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전 혹은 출자받아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 이전형과 기술 출자형으로 구분함 • 실험실 기업이 출연(연)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창업자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기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전만을 받는 기술일 수도 있으며, 창업자는 반드시 연구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연) 소속 재직자도 포함됨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용어 정의를 따름)
이해 충돌	• 본 안내서에서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4호)
관계 회사	• 본 안내서에서 "관계회사"란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하여 연구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관련 기업을 통칭하며 법령상의 용어는 아님. 구체적으로, 연구소기업(출자기업), 연구자 창업기업, 연구소 기술이전 기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함 **①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1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② 연구자 창업기업** •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창업한 기업 **③ 연구소기술 이전기업**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이전된 기업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제1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제❶절
유가증권 거래 행위

1. 주요 이슈 ····· 18
2. 관련 법령 ····· 19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25
4. 기본 방향 ····· 30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32

제❷절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행위

1. 주요 이슈 ····· 35
2. 관련 법령 ····· 36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39
4. 기본 방향 ····· 4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42

제1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1절 유가증권 거래 행위

1. 주요 이슈

- (이슈 1-1-①) 출연(연)의 임직원이 관계회사(연구소기업, 연구자 창업기업, 연구소기술 이전기업 등 포함)의 유가증권을 거래(매수·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임직원의 주식(스톡옵션 포함) 보유 및 처분은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금지 또는 허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출연(연) 기관별로 관련 내규를 통해 허용 여부 및 관련 절차를 달리 운영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연구사업화가 활성화되자, 특히 관계회사의 주식 보유 및 창업 복직 이후에 창업 기업 주식 처분 의무 부과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 대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슈 1-1-②) 출연(연)의 임직원이 관계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래(매수·매도)하는 것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행위에 저촉되는가에 대하여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임직원은 연구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거래·이전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유가증권 거래 방안 마련이 필요함

현장의 질문

- 출연(연) 임직원이 대표자 이외 창업기여자일 때 출연(연) 출자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출연(연)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기술이전 연구자는 기술출자(혹은 기술이전) 창업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반인가?
- 연구자가 실험실 창업 휴·겸직 후 출연(연) 복귀 시 그 기업의 지분을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는가?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출연(연) 임직원의 관계회사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문제는 해당 거래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야 함

  - 관계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회사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되는 경우 그 거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각 조문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시에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도 해당된다면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그에 따른 조치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다만 이 경우 신고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되어야 함)

  -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의 수수를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약 주식의 거래가 제10조에 따른 제한되는 대가의 수수인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만약 그러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1제1호의 ‘유가증권’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음

- 제174조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미공개정보'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등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참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가. 참고 규정·운영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질의한 “출연(연)의 기술보유 연구자가 기술출자(이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권익위 회신(2023.9.7.)

- 질의사항
  - 출연(연)의 기술보유 연구자가 기술출자(이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여서 원천 차단해야 하는지 여부
  - 연구자가 아닌 출연(연)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원천 차단해야 되는지 여부
  - 원천 차단하지 않아도 될 경우,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회신사항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주식 매수·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보유 연구자의 기술출자(이전) 기업 주식 취득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위반했는지는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
  - 공직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용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공직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연구자가 아닌 임직원의 기술출자(이전) 기업 주식 취득 행위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 연구자, 임직원 등 공직자가 기술출자(이전) 기업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1항)

- 또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3항)

A연구원의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A연구원의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는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자회사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A연구원의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사업화책임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 등의 취득) ①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는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는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이해충돌방지지침」 제8조에 따라 신고 및 기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가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감사부서에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 호의 경우, 해당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출자회사와 사적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다.

1.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가 출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 등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들 모두의 지분율의 합계가 연구원의 출자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여기서 지분율의 합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주식의 수를 포함한다)
2.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가 출자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취득하거나, 출자회사의 증자(제3자 배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 등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율이 자신의 최초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화책임자 및 발명자 (여기서 지분율의 합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주식의 수를 포함한다)

신고대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범위: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2021.6)

-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거래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음

- 예컨대, 금융회사나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와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부정거래 위험성이 낮은 공개 분양·공매·입찰을 통한 거래 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현실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 거래 상대방인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광역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인 교통건설국장의 배우자 A는 건축학과 교수인데, 남편인 교통건설국장이 심의하는 건설업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할 경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례의 경우 교통건설국장의 직무관련자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배우자 A가 참여할 경우 교통건설국장은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함

나. 참고 판결례

-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판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11775 판결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 직무 관련성 관련 사례

- 상장법인 내부자와 준내부자는 1차 정보수령자와 달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언제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에만 규제를 받음

- 즉, 자본시장법은 ⅰ)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ⅱ) 주요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ⅲ) 상장법인에 대하여 인허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ⅳ)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ⅴ) 내부자, 준내부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어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 A법인과 B연구소는 B연구소가 개발한 나노이미지센서에 관한 기술을 A법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 후 B연구소는 사내전산망에 'A법인 기술시연회'라는 주간업무보고를 게시하였다. B연구소 교육연수실장 C는 사내전산망에 게시된 'A법인 기술시연회' 내용을 보고 A법인이 나노이미지센서 기술 개발을 발표·공시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A법인 주식 40,500주를 약 1억 3,00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정보가 공시된 후 매도하여 5억 8,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A법인의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본부장(이사)이 A법인 구내식당에서 A법인 기술이전 계약을 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A법인이 개발한 위궤양치료제의 전 세계 판매를 위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와 조만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전해 듣고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 상장법인의 총무과 직원 A는 그 법인의 주식담당직원이 기안하였다가 파기한 이사회 결의서(안)에 회사 정관의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 상장법인인 OO텔레콤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와 자금대차계약 관계에 있던 A는 OO텔레콤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 그 사실이 공시되기전 OO텔레콤 주식을 공매도하였다.

- 중요정보의 범위 관련 사례

  -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 즉,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의사판단에 그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누락된 사실이 공시되었을 경우 기존의 공시된 정보의 총체적 의미를 변경하였으리라고 받아들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임

  - 이때 시장에서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 언론 기사, 기관투자자의 매매 동향 등의 '시장정보'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금리·환율 등 경제정책 등에 관한 '정책정보'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판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61조(주요공시사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9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그 정보의 생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2008.11.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정보의 비공개성 관련 사례

  - 미공개정보는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주지기간의 경과가 필요함.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에서는 금융위, 거래소 신고 또는 보고된 서류의 경우에는 비치된 날로부터 1일 경과,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날로부터 1일 경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의 경우에는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후 12시간 경과, 금융위·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에는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하고 있음

- 판례에서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미공개정보이어야 하는데, 법규정에 비추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절차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한 행위

갑은 A법인의 직원으로서 "A법인이 B에셋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B에셋은 A법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중단한다"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어 A법인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국에 살고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지고 있는 A법인 주식을 처분하라"고만 알려 주었다.
갑의 형이 갑의 전화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모두 매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갑만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인정하여 처벌하였고 갑의 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미공개중요정보 제공행위와 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행위뿐만 아니라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및 정보제공행위와 그 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수령자가 이미 그 정보를 다른 경위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본 방향

소속기관장

법 제9조에 따라 "신고" ↑ ↓ 법 제7조에 따라 조치(직무 재배정, 예외 인정 등)

연구자 등

기술이전, 창업 휴·겸직 후 복직 등 과정에서 관계회사와 주식(상장, 비상장), 스톡옵션 등 유가증권 거래

신고 후 소속기관장에 의한 조치

관계회사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직무상 비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법 제14조, 자본시장법 제174조)

- 이해충돌방지법은 출연(연)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거래 대상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유가증권을 매도·매수하는 상대방이 ①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해당 출연(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다만, 특정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그런데 신고를 통해 허용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임

  -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

- 출연(연)은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등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함

  - 현재 대부분의 출연(연)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규정 개정 혹은 유관 규정의 안내가 필요함

    * A연구원의 경우 기관 심의를 득한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겸직, 휴직도 허용하고 있음.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창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함(A연구원 창업규정 제10조)

- 무엇보다 연구사업화 활성화 측면에서 출연(연) 임직원의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하며, 신고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를 높여 유가증권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출연(연) 임직원이 대표자 이외 창업기여자일 때 출연(연) 출자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출연(연) 임직원의 출자회사 내 직위와 무관하게 출연(연) 임직원의 출자회사의 지분 취득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거래 상대방인 "출연(연) 출자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정해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위의 질문에서 거래의 상대방인 "출연(연) 출자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①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해당 출연(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다만, 특정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함)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직무수행의 지장 여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임

Q2 출연(연)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직무와 관련된 회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관련 비상장주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비상장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임.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직무상 비밀 여부 등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상장예정법인 등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향후 금전적 이익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Q3 기술이전 연구자는 기술출자(혹은 기술이전) 창업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 기술이전 연구자의 창업기업으로부터의 지분 취득이 그 자체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거래 상대방인 "기술출자(혹은 기술이전) 창업기업"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연구자의 해당 지분 취득이 연구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항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제한됨
-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의 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직무에 관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4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법에 위반인가?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을 말함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매수·매도를 그 자체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실현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거래 상대방인 "기업"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유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또는 "소속 출연(연)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의 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연구자가 기업의 주식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직무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5 연구자가 실험실 창업 휴·겸직 후 출연(연) 복귀 시 그 기업의 지분을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는가?

- 복귀 시에 반드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기를 권고함
- 단, 복귀 시 연구자 자신 또는 가족이 3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보유한 회사는 연구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됨. 이때 연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이 연구자의 직무관련자(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인 경우, 연구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함(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이때,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고, 연구자는 해당 조치에 따라야 함



제2절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행위

1. 주요 이슈

- (이슈 1-2-①) 출연(연)과 관계회사가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

  - 관계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연(연)이 구매할 수 있는지, 관계회사 외에는 경쟁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출연(연)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출연(연)과 관계회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현장의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출연(연)은 출자회사 또는 휴·겸직 창업 기업의 제품 및 용역의 구매가 가능한가?
- 출연(연)은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출연(연)이 출자회사가 발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이슈 1-2-②) 출연(연)이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정부 및 산업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관계회사의 경우 출연(연)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출연(연)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연구개발 또는 위탁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음. 그런데 출연(연)의 임직원과 관계회사 간에는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사업자 등의 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위탁연구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특혜가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공동연구개발 또는 위탁연구개발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현장의 질문

- 출연(연)은 출자회사(휴·겸직 창업기업)와 공동연구개발 혹은 위탁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가?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 등 및 이들과 관계된 법인 및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수의계약이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2023 권익위 유권해석 사례집, 132면)
  - 한편, 공공기관 명의의 계약이 아닌 경우, 출연(연)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및 임직원의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연금 교부, 용역 등의 계약·검수 및 기타 평가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출연(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고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관계회사에 대해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됨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제시함

참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2)

- 자신이 담당하는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가족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시,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A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시, 해당 업무와 무관한 B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 아님) 및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공공기관 A의 자회사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회사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대상에 모회사인 공공기관 A를 제외하고, "모회사의 고위공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공공기관 A 외 다른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 자회사에서 발주해서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모회사인 공공기관은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체에서 지방계약법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상의 수의계약 가능범위의 금액을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할 경우 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인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구매 품목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직자가 소액의 지출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임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2023, 14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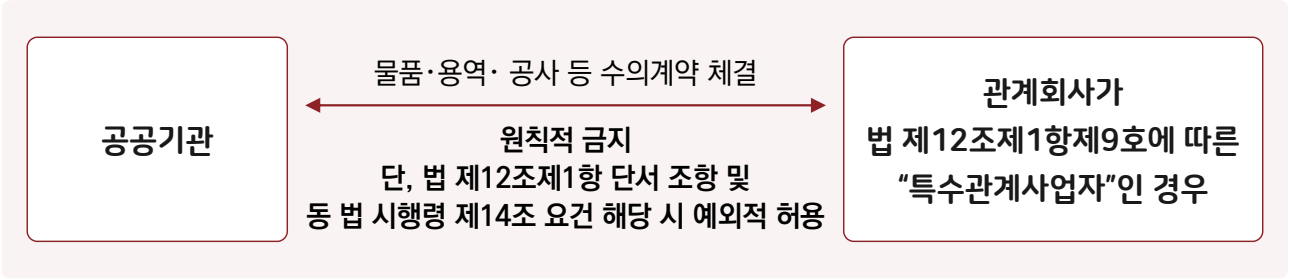
- 출연(연)이 소속 연구자가 창업한 실험실 기업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하지 않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출연(연)이 물품·용역·공사 등에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의 임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재직자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와 이들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로 제한됨(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 또한 금지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험실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출연(연) 관련 규정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2개 출연(연) 모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대상 확인 조항을 규정에 담고 있으며,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거의 동일함

- 차이가 있는 것은 법률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대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출연(연) 규정에서는 이 둘을 모두 담고 있는 기관도 있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만을 담고 있는 기관도 있음
  -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만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연) 규정에 별도로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있음

4. 기본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출연(연)과 관계회사 간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계약체결시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해진 예외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①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 ②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리고 ③ 그들과의 특수관계사업자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한편, 이와는 별개로, 출연(연)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및 임직원의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 30퍼센트 이상 등을 보유한 관계회사는 이해충돌방지법상 해당 출연(연) 임직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임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①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②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 해당 출연(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출연(연)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등에 해당함

- 또한, 출연금 교부, 용역 등의 계약·검수 및 기타 평가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계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출연(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고 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관계회사에 대해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됨

-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인 직무관련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는바, 출연(연)이 발주기관의 위치가 아니라 용역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연(연) 또는 출연(연) 소속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출연(연) 임직원이 겸직 상태로 관계회사에 소속된 경우 그 관계회사가 출연(연)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겸직 상태인 해당 임직원은 출연(연)에서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출연(연)은 출자회사 또는 휴·겸직 창업 기업의 제품 및 용역의 구매가 가능한가?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출연(연)과 관계회사 간 물품·용역·공사 계약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출연(연)에서는 공정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출자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휴·겸직 후 창업한 기업의 제품 및 용역의 구매가 가능할 것임

Q2 출연(연)은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출연(연)에서 물품 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법 제12조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제1호. 소속 고위공직자, 제2호.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제3호.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제4호.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제5호.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제6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제8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9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연)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Q3 출연(연)이 출자회사가 발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인 직무관련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하기 때문에 출연(연)이 발주기관의 위치가 아니라 용역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연(연) 또는 출연(연) 소속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출연(연) 임직원이 겸직 상태로 관계회사에 소속된 경우 그 관계회사가 출연(연)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겸직 상태인 해당 임직원은 출연(연)에서 수행중인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각 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4 출연(연)은 출자회사(휴·겸직 창업기업)와 공동연구개발 혹은 위탁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가?

- 이해충돌방지법은 원칙적으로 출자회사(휴·겸직 창업기업)와 공동연구개발 혹은 위탁연구개발 자체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기를 권고함
-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예를 들어 위탁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출연(연) 소속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출연(연)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위탁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제2장

직무관련 외부활동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제❶절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행위

1. 주요 이슈 ····· 46
2. 관련 법령 ····· 47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48
4. 기본 방향 ····· 5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52

제❷절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 행위

1. 주요 이슈 ····· 53
2. 관련 법령 ····· 54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56
4. 기본 방향 ····· 60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61

제2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1절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제공 행위

1. 주요 이슈

- (이슈 2-1-①) 출연(연) 임직원이 관계회사에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만 않는다면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해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관계회사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출연(연) 연구자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고, 출연(연) 연구자 역시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 (이슈 2-1-②) 출연(연) 임직원이 관계회사에 출연(연)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임직원이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계회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성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출연(연) 임직원은 출연(연) 출자회사, 연구원 창업기업(동료 개인 창업)에 대한 유·무상의 자문이 가능한가?
- 출연(연) 연구자가 기술이전 이후 공식적인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출장비나 자문료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
- 출연(연) 창업지원부장이 소속부서원(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에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됨

  - 예외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됨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함) 제10조에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를 규정함

참고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2)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과 별개로 예외 없이 제한됨. 단, 공적으로는 가능함

-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참석 요청을 하고,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 타 기관으로부터 서면평가,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서면평가, 원고작성 등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무관하게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님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는 공직자가 소관하고 있는 직무만이 아니라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함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이때의 외부강의 등의 구체적 예시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강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공청회·간담회 등의 좌장,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잡지에의 기고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출연(연) 관련 규정

- 출연(연)의 이해충돌방지 규정들이 대다수 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데, 표준안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대다수 출연(연)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일부 인사규정에 관련 내용을 정함)

- 다만, 일부 출연(연)의 경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B연구원, C연구원, D연구원)

  -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으나, “기타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B연구원),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D연구원) 등 개념이 추상적이고 기관장 판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B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의 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9.28.)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겸직이나 인사관리 시행지침 제30조에 따른 타업행위 승인 절차에 따라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C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D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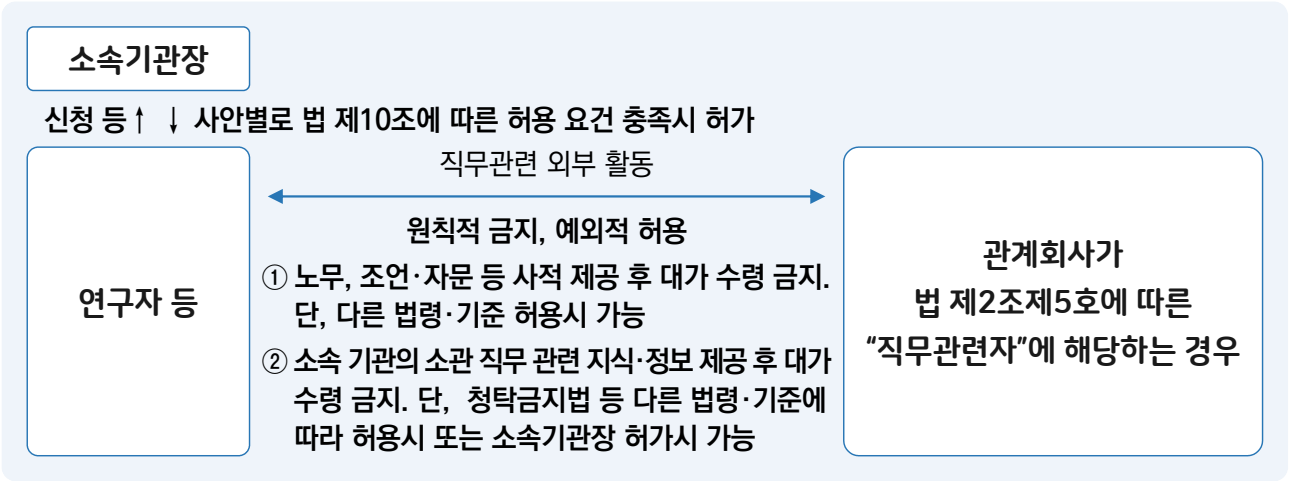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4. 기본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적법·타당한 절차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관계회사에 대한 자문 등이 가능함
  -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 요청을 받아 공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행위,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했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외부활동 가능
-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 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출연(연) 임직원은 출연(연) 출자회사, 연구원 창업기업(동료 개인 창업)에 대한 유·무상의 자문이 가능한가?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없이 자문이 가능함.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자문을 하고 출자회사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서 공문 등을 통해 공적으로 자문을 요청받고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 출연(연)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이 허용될 것임

Q2 출연(연) 연구자가 기술이전 이후 공식적인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출장비나 자문료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

- 연구자(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되므로, 기술이전 이후에 공식적인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출장비나 자문료를 받는 것은 제한될 것임
- 다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및 자문 등과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연구자(공직자)가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자문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Q3 출연(연) 창업지원부장이 소속부서원(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 창업지원부장이 소속부서원(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이므로 그 자체로 제한되지는 않음. 다만, 해당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임

제2절 직무 관련 다른 직위 취임 행위

1. 주요 이슈

- (이슈 2-2-①) 출연(연) 임직원이 휴·겸직을 통하여 관계회사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소속 임직원이 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기관이 출자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실험실 창업의 경우 기술사업화의 중요한 성과로 독려되는 반면, 휴·겸직한 창업자의 이중 소속에서 기인한 이해충돌 이슈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장의 질문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창업을 위한 휴·겸직이 가능한가?
-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창업기업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하는가?

- (이슈 2-2-②) 출연(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반기업의 사외이사 등 임직원이 되어 보수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소속 임직원의 연구역량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외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연(연) 임직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기관의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참여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현장의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겸직중인 연구원이 창업기업에서 노동의 대가로 일부 급여를 받는 것이 적법한가?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금지됨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본문에서 “벤처기업법”이라고 함) 제11조의5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벤처기업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겸직이 가능함

참고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본문에서 "중소기업인력법"이라고 함) 제15조에 따라 출연(연) 임직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음.

참고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2)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서 제한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서의 '직무'가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 기관의 직무인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의 '직무'는 '공직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됨

  -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고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 가능함

- 공직자의 창업 겸직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공직자가 벤처기업법 제11조의5, 중소기업인력법 제15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 단서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 교원의 창업신청 자격과 관련, 많은 경우 교수 임용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경과한 교원에 한하여 교원창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에 제한을 두면서도 예외를 인정함
  - (사례A) 임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교원이며,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 재직 연수가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해서 교원창업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사례B) 부교수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원칙이지만,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교원창업으로 간주하여 창업 겸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우회적인 창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외부 기업 또는 학생창업기업 등에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관여하고 있으면 겸직 승인을 받도록 교원창업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례C) '창업 관련 활동'이라 함은 소속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등기이사, 지분 참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단, 지분 참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였을 경우를 말함
  - (사례D) 대표 및 임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창업자 단독 또는 창업자와 특수관계자(배우자, 친인척 등)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겸직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겸직 교원이 창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 대학 및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사례E)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직원에게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 시행 지침에 따른 제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겸직 2년 차 이후 정액급의 70%, 4년 차부터 정액급의 50%를 지급하며 정액급 연동 항목도 이에 준함

  - (사례F)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겸직 시간을 총 근무시간의 1/5 이하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하도록 함. 한편, 1개 회사에 한하여 총 근무시간의 1/5을 초과하여 특별히 겸직을 허가받은 "사외이사 이외의 임직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겸직 승인을 받은 겸직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에서의 근무 비율에 따라 보수를 조정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겸직 기관의 보수 등 처우 조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창업 가이드북을 통해 교직원 창업자의 보수와 관련한 급여규정과 연봉제 시행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려대 및 일부 대학들은 겸직 연차와 무관하게 교원창업을 임용 단계 시부터 허용하면서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영입한 일부 교원에 대해 정액급 대비 지급비율을 임용 초기부터 하향 조정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한국과학기술원 교직원 창업자의 보수(창업규정 제11조)

-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직원에게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제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정액급 연동 항목도 이에 준함).

겸직 년차	1년 차	2, 3년 차	4년 차
정액급 대비 지급비율	100%	70%	50%

출연(연) 관련 규정

- 출연(연)의 경우 창업을 목적으로 한 겸직·휴직의 경우 창업관련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일부 출연(연)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음

B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의 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9.28.)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겸직이나 인사관리 시행지침 제30조에 따른 타업행위 승인 절차에 따라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C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D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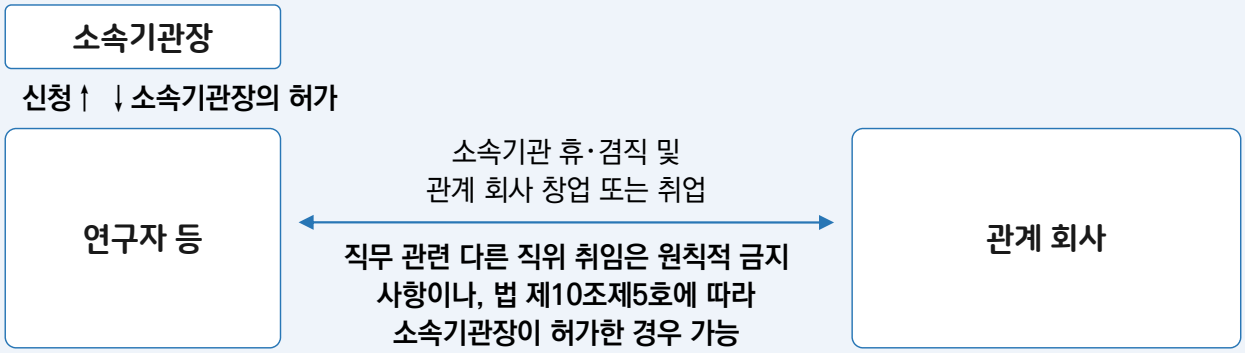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연구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원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원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연구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4. 기본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연구자 등의 창업을 위한 휴·겸직을 허용할 수 있음
- 출연(연)이 연구자에게 창업에 대한 겸임·겸직을 승인하는 것은 연구사업화를 위하여 연구자의 본분인 출연(연) 연구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각 출연(연)이 정한 승인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만 겸임·겸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연구자 창업은 기술의 개발, 고용 촉진 등을 통해 기관 또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원과 창업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이 창업기업에서 임원 등으로 겸직하지 않더라도 창업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창업에 준하여 겸직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아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연구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으로 발행주식 총수 및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연구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이며,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이기도 함

- 연구자의 실험실 창업 겸직의 절차 및 급여 수령 관계 등에 대해서는 출연(연) 차원에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창업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출연(연)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일정 수준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 연구원에서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낮추어 출연(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거나, 일부를 출연(연)의 사업화 기금 등으로 기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창업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사전에 출연(연) 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출연(연)에 관련 규정이 없고 창업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 및 사유를 사후에라도 출연(연)에 신고(보고)하여 불필요한 감사 또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창업을 위한 휴·겸직이 가능한가?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실험실 창업 기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겸직이 가능함
- 휴·겸직 허용 조건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한 기관 내규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향후 법령 또는 하위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임

Q2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임직원은 아니지만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창업기업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하는가?

- 법률상으로 강제 규정은 없으나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식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겸직 승인절차(예시: 겸직 신청 → 연구원창업지원심의회 등 심의 → 기관장 승인)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기관 내규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3 겸직 중인 연구원이 창업기업에서 노동의 대가로 일부 급여를 받는 것이 적법한가?

- 절차에 근거하여 신고하고 승인 후 가능함
- 다만, 겸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출연(연) 근무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출연(연)에서는 겸직 시 겸직회사에서의 근무시간 한도, 급여 한도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대학의 경우는 겸직 시 원소속기관의 급여를 일부 삭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등을 내도록 규정을 갖추고 있음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제3장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이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제❶절
기관 소유·임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1. 주요 이슈 ····· 66
2. 관련 법령 ····· 67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67
4. 기본 방향 ····· 71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72

제❷절
연구개발성과 소유와 이해충돌

1. 주요 이슈 ····· 74
2. 관련 법령 ····· 75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 76
4. 기본 방향 ····· 82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 83

제3장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이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제1절 기관 소유·임차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1. 주요 이슈

- (이슈 3-1-①) 관계회사가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관계회사의 경우, 관계회사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을 이전해 준 출연(연)이 보유한 공간 및 장비와 기술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 출연(연)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그 가능 여부 및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겸직중인 연구원(시험평가 업무의 책임연구자)이 소속 출연(연)에 시험 의뢰를 해도 되는가?
- 출연(연)은 출자회사에 장비(혹은 기술)를 제공해도 되는가?
- 겸직중인 출연(연)의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필요로 본원의 장비를 활용해도 되는가?

- (이슈 3-1-②) 출연(연) 특허 무상 나눔 행사에서 관계회사를 참여시키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 보유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나눔(예시: 무상 기술 양도, 실시권 무상 허여) 또는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는 특허 무료 나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관계회사에게 무상 나눔하는 것이 특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출연(연)의 특허 무상 나눔 행사에서 연구자 창업기업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해당 행사에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됨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가. 대학 교원 발명의 특허 사용 조건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2023)[1)]

- 창업 교원이 사용하는 연구실 및 실험실 장비 등은 대학의 시설 및 인프라이고, 비록 창업 교원 자신의 발명에 관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위해 실험실 장비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
  - (A대학 사례) 창업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0.3% ~ 3%의 경상기술료를 정하고 있음
  - (B대학 사례) 발명자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자기실시'라는 명목으로 규정화하여, 선급기술료는 특허비용+α로 하고, 경상기술료를 포함한 계약으로 진행하되 '자기실시'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1) 김승균 외 (2022),「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조정 안내서」, 한국연구재단

- 많은 국내 대학이 교원창업기업의 창업 공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 내 공간, 시설 및 장비는 엄연히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자산이므로 별도 법인인 교원창업기업은 공간 및 시설,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며, 교원창업기업의 교내 공간 및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학창업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권고함

해외 대학에서의 교원 발명 기술이전 조건

- 미국 대학의 경우 발명자 창업기업과의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은 비발명자 기업에 대한 유사한 기술이전 조건의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미국대학은 교원창업기업에 대해 대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과 대학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
  - (Stanford 대학) 창업기업에 스탠포드 교직원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해충돌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스탠포드 교직원은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기술이전 협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Johns Hopkins 대학) 교수가 창업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창업기업을 대표하여 존스홉킨스 대학과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됨. JHTV(Johns Hopkins Technology Venture)의 FastForward 팀은 발명자가 창업한 기업에게 코칭, 멘토쉽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사무실과 연구실을 제공함. 그러나, 발명자가 창업한 기업과의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은 비발명자가 창업한 기업과 유사한 기술이전의 평균적인 조건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3.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 10.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에 관한 신청 검토 기준 및 포기 전 양도에 대한 검토 기준 등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2023. 1. 그 개정본을 마련함

- 개정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의 검토기준'은 ①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지식재산권, ②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지식재산권에는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등록특허나 기술이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등록특허, 사업성이 부족하여 권리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특허 등이 포함됨

2) 최지선 외(2023),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특허청, 8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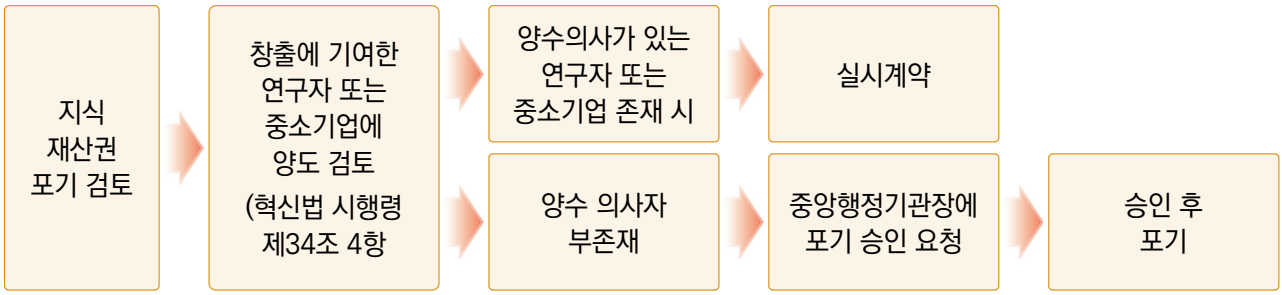
-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권리자가 소유권의 유지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나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됨

❖ 비교: 개정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1.10.)」상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의 검토기준'과의 차이

• 개정 전 매뉴얼에서는 등록 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특허 역시 포기 승인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매뉴얼에서는 출원 특허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승인의 대상이 등록 특허로 한정됨

- '지식재산권의 포기전 양도 검토'와 관련하여,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기 이전에 양도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기본 사항을 정하고, ②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과 ③ 양수인 또는 양수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포기 승인을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음

[그림]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검토 절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2023, 8면.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2023)[3)]

- 직무발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원 창업 이후 전용실시권 계약 및 기술이전의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연구윤리 이슈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3) 한국연구재단 (2023),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

- 이 경우 교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보다 많이 귀속되는 창업기업이 저렴하게 전용실시권이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게 기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유인이 존재하여, 대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원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 시 대학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책정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해당 특허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함
  - 참고 사례로, 광운대학교의 경우 2020년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여 발명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1) 특수 관계 유무 확인서 2)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나. 출연(연)의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규정

≫ 출연(연) 관련 규정

- 일부 출연(연)의 경우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음
(예시: B연구원, C연구원, D연구원)

B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의 2(연구원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연구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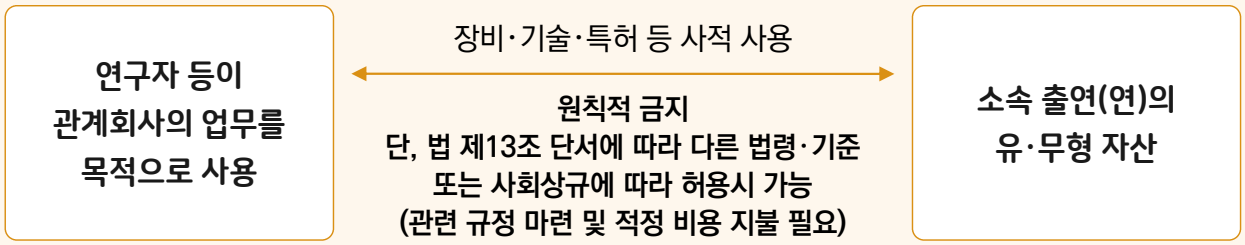
C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연구원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연구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12조(연구원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연구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본 방향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 반대 해석상, 관계회사가 출연(연)이 보유한 공간 및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용의 목적이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사용 가능함

- 다만, 관계회사가 출연(연)이 보유한 공간 및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것임

  - 특히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특허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출연(연)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출연(연)이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출연(연)의 특허 무상 나눔 행사에서 관계회사의 참여들 배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허용될 수 있음

  - 출연(연)의 특허 무상 나눔은 포기대상 미활용 특허를 제3자인 중소기업에 사용·수익하는 행위이지만 통상 특정 기관 대상이 아닌 여러 기업 대상으로 공고하여 진행하고, 국가 R&D 성과의 활용률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공익이 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계회사에 유·무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기술이전 하여야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나눔하는 경우 배임 등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유의하여야 할 것임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겸직 중인 연구원(시험평가 업무의 책임연구자)이 소속 출연(연)에 시험 의뢰를 해도 되는가?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 중인 연구원이 본원인 출연(연)에 시험 의뢰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다만, 시험 의뢰와 관련한 출연(연)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함

Q2 출연(연)은 출자회사에 장비(혹은 기술)를 제공해도 되는가?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금지 행위가 아닌 한 출연(연)이 출자회사에 장비(혹은 기술)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다만, 장비(혹은 기술)의 제공과 관련한 출연(연) 내부규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계회사는 기관에서 정한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임

Q3 겸직 중인 출연(연)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필요로 본원의 장비를 활용해도 되는가?

- 겸직 중인 출연(연)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필요로 본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시설 등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해당 사용이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및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할 것임

Q4 출연(연)의 특허 무상나눔 행사에서 연구자 창업기업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해당 행사에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관계회사라고 하여 그 자체로 출연(연)등과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출연(연) 특허 무상나눔 행사에 관계회사가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한 특혜 없이 일반기업과 동일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허를 양도(또는 기술이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각 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관계회사에 유·무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기술이전 하여야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나눔하는 경우 배임 등 명백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유의하여야 할 것임



제2절 연구개발성과 소유와 이해충돌[4)]

1. 주요 이슈

- (이슈 3-2-①) 관계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의 소유권을 관계회사 단독으로 갖게 되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의 기술을 이전받은 관계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발명을 이룬 경우, 관계회사 입장에서는 자사 소속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이므로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고, 출연(연) 입장에서는 해당 발명이 어떤 형태로는 출연(연)에서 이전한 기술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 공동소유하고자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출연(연)과 관계회사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연구자 창업기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 (이슈 3-2-②) 출연(연)에서 관계회사로 이전된 기술에서 파생되어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술의 소유권을 관계회사 단독으로 갖게 되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발생함
  -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관계회사가 그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발명을 이룬 것이 명백한 경우(통칭 "개량발명"이라고 함), 그 개량발명의 소유권을 출연(연)과 관계회사 사이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있음

현장의 질문

❖ 출연(연)에서 이전된 기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진 개량발명으로 특허가 얻어지는 경우 그 권리는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4) 본 이슈 및 내용은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2023)" 및 "교원의 기술 창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가이드(2023)"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2. 관련 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등(여기에는 공공기관 소유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될 것임)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참고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개발은 참여한 연구개발기관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며, 위탁연구개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참고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 참고 규정·판례·운영 사례

가. 참고 규정·운영 사례

≫ 창업 후 발명의 권리 귀속: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2023, 132-133면)

- 출연(연)은 휴·겸직 후 실험실 기업을 창업한 연구자가 실험실 기업 재직 중 발명을 이룬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비창업기간, 창업휴·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원 소속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원 전에 신고해야 함
  - 신고 후 관련 위원회에서 직무발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향후 자유발명으로서 (실험실 기업 관점에서의 직무발명 여부는 논외로 하고)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창업연구자와 출연(연)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향후 동 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고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판단받고 그에 따른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정하기를 권고함

- **출연(연) 소속 연구자가 휴·겸직 상태에서 실험실 기업을 창업한 이후 이룬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출연(연)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는 발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예비창업기간, 창업휴·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출연(연) 관련 발명에 대해 창업자가 출연(연)에 신고하고 이 발명이 관련 위원회에서 직무발명으로 확정된 경우, 이 발명은 일단 출연(연)의 소속 연구자가 발명한 직무발명임은 분명하지만 해당 연구자는 실험실 기업 소속 종업원이기도 하므로 해당 연구자와 실험실 기업 간의 관계에서 해당 발명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해당 발명이 실험실 기업과 출연(연)에서 모두 직무발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발명은 출연(연)과 실험실 기업이 발명자와의 관계에서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두 기관이 공동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발명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발명의 특성 및 발명이 이루어진 과정과 창작적·비창작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권고함

  - 한편, 벤처기업법 제16조의7제1항 단서조항 및 동 조 제2항에 따라, 출연(연) 입장에서 해당 직무발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이 아닌 경우,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온전히 출연(연)이 소유하는 경우라도 발명의 성격에 따라 발명자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휴·겸직 후 실험실 기업을 창업한 소속 연구자가 이룬 직무발명을 신고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

  -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규정을 마련해 두기를 권고함. 신고 규정을 마련해 두면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의 판단 및 (직무발명인 경우) 권리귀속의 지분 협의 등에 있어 그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향후 출연(연), 실험실 기업, 연구자 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규정이 사실상 직무발명이 아닌 모든 발명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고 이들 발명 모두가 출연(연)의 직무발명으로 판단되어 창업 연구자 및 실험실 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음

-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출연(연)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판단 절차를 명문화하고, 우리 판례에 따른 직무발명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연구자 및 실험실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휴·겸직 시 직무발명 성립 여부는 급여 수령 여부, 재직기간 산입 여부, 소속연구기관의 복무관리(지휘·명령) 여부, 소속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시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등)
- 또한 창업지원규정에 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간 직무발명 소유지분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소유지분 협의 시 고려할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포함하는 것도 권고함

기술이전받은 기술에 관한 개량발명의 권리 귀속: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2023, 149-150면)

- 개량발명(후속발명)의 유형 구분
  - 개량발명(후속발명)은 원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 이용발명이 되며,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그 일부를 포함하면 이용발명이 아닌 후속발명, 즉 불완전이용발명(협의의 개량발명)이 됨

- 개량발명(후속발명)은 반드시 소속 출연(연)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개량발명(후속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비창업기간, 창업 휴·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원 소속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원 전에 신고하도록 권고하므로, 개량발명(후속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고하기를 권고함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휴·겸직 창업 시의 발명의 원소속기관 직무발명 여부는 원소속기관과 해당 발명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등), 개량발명(후속발명)이 직무발명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휴·겸직의 기간, 원소속기관과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재직기간 산입여부 및 급여 지급 여부 등을 토대로 해당 발명이 출연(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개량발명(후속발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일차적으로 후속발명의 경우 연구자의 실험실 기업 재직 중의 발명이므로 실험실 기업에 직무발명 기관 권리승계에 관한 내규 등이 있다면 해당 발명은 실험실 기업에서 직무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이때 해당 발명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소속기관인 출연(연)에서의 직무발명에도 해당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연)과 실험실 기업 각각에서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그 지분만큼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 경우 지분은 각 기관의 창작적·비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편, 공유특허의 경우 현실적으로 특허권의 활용에 장애가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크지만, 우리 「특허법」에서는 각 공유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유특허라도 별도의 협약 등이 없는 한 자기 실시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특허법」 제99조제3항), 그리고 휴·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해당 발명이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이 아닌 한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연구자가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벤처기업법 제16조의7제1항 단서 조항 및 동 법 제16조의7제2항) 등 관련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개량발명(후속발명)은 출연(연)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먼저 법령상으로만 보면, 우리 「특허법」 상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이용발명의 원발명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특허법」 제98조), 이용발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발명 특허권 보유 기관은 출연(연)의 이용 허락을 얻은 후에 실시가 가능하지만, 실험실 창업 후의 개량발명의 경우 이미 원발명의 이용 허락을 받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현재 출연(연) 대부분은 원발명에 대한 (통칭)기술이전 표준협약서에서 실시권자가 원발명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출연(연)에 통지한 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기술이전 및 창업활성화의 측면에서 협약서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2023)

- 각 대학에서는 해당발명을 교원의 직무발명으로 간주하고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A대학은 교원창업기업이 발명한 지식재산권도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따라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은 교원이 창업기업에서 개량 발명 또는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창업기업과의 직무발명 여부 판단을 거쳐 대학과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고 있음. 공동소유 시 창업기업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창업기업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창업기업에서 지원받는 연구비에서 부담하도록 함
  - C대학은 내부적으로 창업기업과 대학 간 지식재산권 지분의 분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겸직" 교원의 창업기업 겸직 참여율에 따라 발명자 지분을 산학협력단과 창업기업이 분배하여 승계하도록 운영함. 예를 들어, 창업기업의 겸직 참여율이 10%인 경우, 발명자 지분 90%는 산학협력단, 10%는 창업기업이 소유함. 다만, 창업기업의 지분이 높아야 될 상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분이 최대 50% 이내로 지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 특히 개량기술의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큰 데,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기술이전계약 내용에 개량기술을 공동소유로 명시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언제까지 개량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지에 여부 및 대학의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계약기술과 유사한 타 연구자의 발명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있음
  - 이와 같이 "계약기술"이 원천성이 높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개량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예측되는 경우, 그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대학은 개량기술을 개발하는 주체(연구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계약기술"의 해당 발명자가 개발한 개량기술로 한정하는 것도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창업 겸직 상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대학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권리 귀속 및 지식재산권 유지 등에 관한 절차,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창업기업의 교원은 대학과 고용 관계에 있는 교수의 신분이므로 연구진실성 측면에서 창업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산학협력단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창업교원이 이를 알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창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발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학의 종업원인 교원이 제삼자인 교원창업기업 및 근로자와 공동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인 대학은 교원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됨
  - 교원이 창업으로 인해 겸직 상태라면, 해당 교원은 대학의 종업원이면서 동시에 창업기업의 종업원 신분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원이 겸직 상태에서는 대학과 창업기업에 모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
  - 다만, 대학과 창업기업의 관계, 발명자의 기여도, 투자 유치나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비용(출원, 등록, 유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규정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

나. 참고 판결례

직무발명 미신고 및 제3자 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함

사내 창업기업 발명의 권리귀속 판단 기준(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요건인 '종업원 등'의 의미, 그리고 타 회사로 출장을 나간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또는 사내 창업을 한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이를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사례는 연구원창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발명자 X가 「발명진흥법」상 A공사의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X의 특허 발명이 A공사의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A공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휘, 명령까지 받았어야 한다는 것임. 즉 겸직상태에서는 직무발명에 해당되나, 휴직인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 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 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 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법원은 A공사의 종업원이 B회사에 출장을 가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이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출장 기간 중 B회사의 사원이 되어 B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B회사의 지휘 내지 명령까지 받았다면 B회사의, 그 반대라면 A공사의 직무발명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종업원이 사내 창업을 위한 휴직을 하여 창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선 피고 X는 사내 창업 휴직 기간 동안 원고 A공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 기간은 재직 연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며, 원고 A공사에게는 위 기간 동안 피고 X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 X는 피고 B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 B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 B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X의 사내 창업 휴직 기간 중에 출원된 이 사건의 특허발명을 원고 A공사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본 방향

- 출연(연) 연구자가 창업을 위한 겸직 상태에서 창출한 지식재산권은 출연(연)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단, 이에 관한 절차, 비용 등 관련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겸직인 경우에는 출연(연) 연구자의 신분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창업기업의 발명도 직무발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연)과 연구자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해야 하며, 지분에 대해서는 출연(연)과 창업기업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5.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Q1 연구자 창업기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 예비창업기간, 창업휴·겸직기간 중에 발생한 창업자의 원 소속기관 관련 직무발명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원 전에 신고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직무발명으로 판단되면 출연(연)과 창업기업에 모두 신고한 이후, 해당 발명의 특허에 관한 지분은 출연(연)과 기업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관한 절차·비용 등 관련 내용을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Q2 출연(연)에서 이전된 기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진 개량발명으로 특허가 얻어지는 경우 그 권리는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 출연(연)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개량발명(후속발명)의 경우 그 외의 발명에 비하여 소속 출연(연)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소속 출연(연)에 신고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개량발명의 참여 기관별 기여도를 산정하여 소속 출연(연)과 창업기업이 공동소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우리 「특허법」에서는 각 공유자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유특허라도 별도의 협약 등이 없는 한 자기 실시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실시가 가능함(「특허법」 제99조제3항)



마치며

본 안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출연(연)의 연구사업화가 크게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고 연구자가 적법하고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쳐 연구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사업화를 촉진하며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및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연구현장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안내서는 연구사업화에 관하여 출연(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로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최초의 안내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안내서에서는 출연(연) 연구자의 주식 매매 등 연구사업화 측면에서 오랜 기간 논쟁적 이슈였으나 관련 법령에 명확한 허용 또는 금지 여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우려가 더욱 컸던 행위들에 대하여 가부 및 기준·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본 안내서는 출연(연) 연구현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인 만큼 검토 대상 행위의 유형이 제한적이고 안내의 내용 역시 다소 원칙적인 수준을 견지하는 한계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본 안내서는 1차 정책연구 성과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안내서 제정을 위한 2차 연구의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일부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주기적인 개정본 발간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안내서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와 연구사업화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문화 조성의 시발점이 되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부록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록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록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부록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부록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록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저자 소개

기획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최윤억 과장/조규민 사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팀 (조지혁 부장/김요한 팀장)

정책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선우 박사)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연구책임자: 최지선 변호사)

자문 감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김희리 사무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이재훈 교수/변호사)

발간 지원

한국연구산업협회 정책기획팀 (조철희 사무국장/박형준 부장/노정래 과장/김지현 주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창업팀 (윤정근 팀장/문혜정 책임)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팀 (044-287-7415)

※ 본 안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www.nst.re.kr)
- 한국연구산업협회 (www.rndia.or.kr)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www.compa.re.kr)

※ 발행처의 사전 승인 없는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